



# 압축성형기 작업 안전

## ■ 압축성형기

압축성형은 열경화성 플라스틱 성형에 주로 사용되는 성형 방법으로 플라스틱 성형의 기본이 되는 성형방법이다.

그 방법은 뜨겁게 한 금형내의 공간(cavity 라고 한다)에 열경화성 플라스틱 성형재료를 넣어, 압축성형용 프레스 사이에 끼워서 굳게 하는 방법이다. 열가소성 플라스틱에 이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면 금형을 뜨겁게 하거나 식히거나 해야 되므로 특별한 경우에만 한정된다.

압축성형기는 프레스 형태의 압축성형기가 있으며, 산업 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안전검사의 적용 대상, 비대상을 명확히 구분, 관리하여야 한다.

## ■ 용어의 정의

### 가. 위험요인(Hazard)

신체의 손상이나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.

### 나. 가드(Guard)

기계의 일부로서 방호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방벽이며 케이싱, 덮개, 스크린, 문, 울타리(방호울) 등을 말한다.

### 다. 고정식 가드(Fixed guard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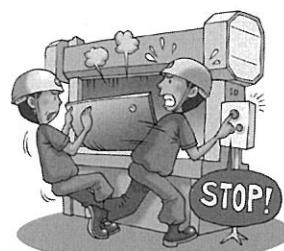
가드가 특정위치에 용접 등으로 영구적으로 고정되거나 고정장치(스크루, 너트 등)로 부착된 구조로서,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가드의 제거 또는 개방이 불가능한 구조의 가드

### 라. 연동식 가드(Interlocking guard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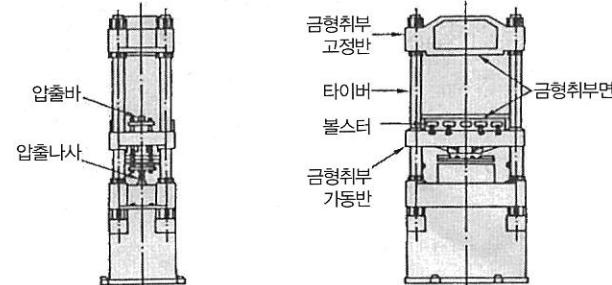
기계의 위험한 부분이 가드로 방호되어 가드가 닫혀야만 작동 될 수 있고 가드가 열리면 정지명령이 주어지는 연동장치와 조합된 가드를 말한다. 단, 가드가 닫혔을 때 기계의 작동이 초기화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.

### 마. 가동유지장치(Hold to run)

수동으로 버튼을 누를 때에만 작동되고 버튼을 놓으면 자동으로 정지되는 조작 장치



## ■ 압축성형기 명칭



## ■ 사고 원인

압축성형기 사고는 정상 작동 중 또는 유지보수와 금형설치 작업 중 발생 위험이 높다.

### 가. 동력에 의한 금형의 움직임

- 불안전한 방호 또는 방호장치의 미설치
- 연동장치의 결함/해제
- 격리되지 않은 가드/기계 내부의 작업
-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기능 미흡

### 나. 금형의 낙하

- 받침대 제거 및 잘못된 유지보수
- 상부금형 볼트의 파단, 전단

### 다. 안전장치의 무효화 등 안전기능 제거

## ■ 압축성형기 안전 점검

사고의 상당수는 압축성형기에서 부적절한 방호와 연동장치 기능을 무효화하거나 제거하고 작업하기 때문에 발생한다.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의 최소한의 점검이 실시되어야 한다.

### 가. 운영 관련 점검

- 모든 고정식 가드와 연동식 가드가 제 위치에 있으며 안전한지 확인
- 위험한 부분을 방호하는 연동식 가드가 열리면 즉시 기계의 동작 정지되는지 확인
- 전방 가드가 개방될 때 기계 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는지 확인

- 모든 제어 유닛 덮개는 덮여 있고 잠겨 있으며 키를 제거 했는지 여부
- 금형이 볼트로 채결 상태

#### 나. 유지보수 점검

- 공구를 사용해야만 해체할 수 있는 고정식 가드 설치 확인
- 모든 연동장치가 정확하게 연결되고, 가드에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
- 위험한 부분을 방호하는 연동식 가드가 열리면 즉시 정지 상태
- 가드가 열린 상태에서 위험한 부분이 가동 상태
- 각 채널과 각각 독립적으로 그것을 보호하는 위험부분을 멈추는 이중 연동 시스템
- 동력으로 작동되는 가드가 설치되어 있다면 가장자리에서의 협착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여부
- 모든 압력 플렉시블 호스가 양호한 상태이고 그들이 제 위치에 안전하게 채결상태
- 고강력 강재 볼트(형판에 상부금형을 고정하는 것)가 양호한 상태
- 비상 정지 장치는 기계의 모든 연속적인 움직임을 막을 수 있는지 확인
- 기계를 리셋하기 전에 비상 정지 장치의 활성화 후 어떤 위험부분의 작동이 가능한지 여부
- 압력 감지 매트를 무게나 전자 감지 막에 시험편을 적용하는 동안 위험한 부분의 작동이 방지되는지 확인
- 기계적인 제한이 있다면 전전하고 적절히 조정되고 올바르게 기능을 하는지 여부
- 육안검사로부터 어떤 전선의 손상이 확인 되는지 여부
- 제어 유닛의 덮개는 덮여있고 잠겨 있으며 제거된 열쇠는 지정된 사람에 의해 관리 되고 있는지 여부
- 단열은 제 위치에 양호한 상태로 되어 있으며 고온 표면에는 경고 표지가 있는지 여부
- 금형 내에 존재 감지 센서가 있다면 양호하게 작동하는지 확인

#### 05 금형 교체 시 작업안전

사고는 작업의 안전시스템이 이행되지 않고 연동장치가 무시되기 때문에 세팅하는 동안 발생한다. 금형 교체 시 안전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#### 가. 금형 교체 전

- 상부 형판은 최고로 상승시킨 위치에서 받침대로 받쳐야 한다.
- 배출 메커니즘에 접근하기 전에 배출 메커니즘의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.
- 무거운 금형을 해체하고 설치하기 위하여 적절한 양중 설비를 준비해야 한다.
- 공구 설치 진행 과정을 설명하는 표시를 기계 제어부에 하여야 한다.

#### 나. 가드/연동장치를 갖춘 금형 교체

- 금형구역에서 기계의 안전장치의 기능을 먼저 확인하고 금형 교체, 설치 또는 작동을 해야 한다.
- 만약 어떤 신체적 작업이 형판 사이에서 필요하다면 비상 정지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.
- 가드가 열린 상태에서 형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면 기계 제어부에 적절한 무효화 조치를 한 후에 한하여 작동해야 한다.
- 설치시간 길어지고 동력에 의한 프레스의 움직임이 필요 없다면 기계는 전원을 차단하고 저장된 에너지를 방출 시켜야 한다.

#### 다. 가드/연동 장치제거 상태에서 금형교체

- 가드 또는 연동장치가 제거되어야 한다면 기계는 전원을 차단하고 저장된 에너지를 방출해야 한다.
- 가드가 제거된 상태에서 프레스 금형의 동력 이동이 필요하다면 자동적으로 미동으로 되는 잠금식 모드 선택 키(Lockable mode selector key)를 사용하거나 가동 유지장치 또는 양수조작 제어로 저속 이동만 해야 한다.

#### 라. 금형 교체 후

- 가드/연동장치가 복원될 때 그리고 작업자에게 기계를 인도하기 전에 월간 유지 관리리스트에 관련된 점검은 가드가 적절하게 기능을 하는지 증명하기 위해 수행 되어야 한다.
- 기계적 구속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.
- 작업자는 기계에서 생산이 시작되기 전에 동작 점검을 독립적으로 시행해야 한다. ☺



# 화학물질 작업 안전

## ① 점검 목적 및 적용 범위

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포장 및 용기 등에 부착된 경고표지와 '물질안전보건자료(Material safety data sheets, MSDS)'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화재·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 화학물질을 저장·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.

## ② 용어의 정의

### 가. 경고표지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1조에 의해 화학물질 등의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표지를 말한다.

### 나. 화학물질 등

원소 및 원소간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화학물질 단위와 화학물질의 주성분에 부형제, 용제, 안정제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모두를 말한다.

### 다. 혼합물

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을 말한다.

### 라. 용기

고체, 액체 또는 기체의 화학물질 등을 함유한 제제를 직접 담은 강제, 합금강제, 플라스틱, 유리, 비닐포대, 종이포대 등으로 된 것을 말한다. 다만, 레미콘 컨테이너는 제외한다.

### 마. 포장

화학물질 등이 담긴 용기를 담은 것을 말한다.

### 바. 그림문자

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·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다.

인화성·불반응성 자기반응성 등	폭발성·자기반응성 유기과산화물	산화성, 유기과산화물	급성독성, 피부자극, 심한 눈 자극성 등	초흡기과민성, 발암성·생식독성	금속, 피부 부식성, 심한 눈 손상성
수성환경유해성	고압가스	금성독성	폭발성(등급1.5)	폭발성(등급1.6)	

## 사. 신호어

유해·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기재되는 '위험' 혹은 '경고'라는 문구를 말한다.

### 아. 유해·위험문구

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·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문구를 말한다.

### 자. 예방조치 문구

화학물질 노출 또는 부적절한 저장 및 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·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, 대응, 저장 및 폐기에 관한 주요 유의사항을 나타내는 문구를 말한다.

## ③ 경고표지의 구성과 내용

### 가. 경고표지 양식

용기 및 포장에 부착된 경고표지의 크기는 용기 및 포장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그 내용은 "2. 용어의 정의 – 바. 그림문자"와 같이 구성되며, 아래의 화학물질의 경고표지 양식을 참조한다.

(명 칭)	
(그림문자 예시)	(신 호 어)
	유해·위험 문구 :
	예방조치 문구 :
공급자 정보 :	

### 나. 그림문자의 표시

물질의 명칭 아래에 표시된 그림문자를 통해 화학물질 등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위험성,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을 파악할 수 있다. 그림문자는 최대 4개까지만 표시하기 때문에 4개의 그림문자가 표시된 경우 또 다른 위험성 및 유해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.

아래의 표와 같이 물질의 유해성이 중복되는 경우 어느 하나만 그림문자로 표시될 수 있으므로 또 다른 위험성 및 유해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.

해당되는 그림문자	→	표시된 그림문자
	→	
	→	
	→	
	→	

#### 다. 신호어

화학물질 등의 유해·위험의 심각성에 따라 '위험' 혹은 '경고'의 신호어가 제시되는데, 위험과 경고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 문구만을 기재한다.

### ▣ 화학물질 안전관리

#### 가. 일반사항

화학물질 저장, 취급 및 제조와 관련된 안전대책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한다.

- ① 위험성평가 : 화학물질 저장, 취급 및 제조와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의 도출 및 그로 인해 예측되는 결과 파악
- ② 예방조치 결정 :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예방조치 파악
- ③ 유출방지 및 관리 : 화학물질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대책 파악
- ④ 안전대책의 유지 : 안전대책의 적용 여부 확인 및 유지관리
- ⑤ 작업환경 측정 : 화학물질 등의 노출 정도 측정(적정한 관리 여부 확인)
- ⑥ 작업자 교육 및 훈련 : 화학물질 등의 위험 요인과 안전 대책에 대한 교육과 훈련 실시

화학물질 등의 유출을 방지하고 제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 사항을 고려한다. 이때 우선되는 사항을 적용하기에 현저히 어려울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① 화학물질 등의 저장, 취급 및 제조설비를 완전 밀폐형으로 관리

② 개방이 필요한 부분에는 국소배기설비 설치

③ 해당 작업장에 일반 환기설비 설치

④ 화학물질 등이 쓴아지거나 누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방법 및 절차 수립

⑤ 화학물질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자 및 작업시간을 최소화

#### 나. 취급 전 안전대책

① 화학물질을 저장 및 취급하기 전 경고표지에 나타난 유해·위험문구를 확인한다.

② 유해·위험문구에 인화성이 언급되었다면 MSDS를 확인하여 인화점과 가연범위를 확인하여, 인화점이 대기온도 보다 낮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.

- 저장 및 취급 장소가 밀폐된 공간이거나 실내일 경우에는 화학물질 누출 가능성에 따라 가스감지기 및 경보기를 설치하여 공기 중 농도가 폭발하한(LFL)의 10%를 넘을 경우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

-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고 환기 및 국소배기 설비 등을 이용하여 공기 중 농도가 LFL의 10%를 넘지 않도록 한다.

- 저장 및 취급 장소는 화학물질의 누출 가능성에 따라 폭발 위험장소로 구분하고 방폭전기·기계기구를 사용한다.

③ 화학물질의 예방조치문구를 확인하여 화학 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.

④ 화학물질의 MSDS를 확인하여 누출 시 대응방안과 필요한 방재도구를 갖추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⑤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누출 시 대응방안에 대해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.

#### 다. 취급 중 안전대책

① 화학물질 취급 중 누출되지 않도록 작업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화학물질 취급 중 누출되더라도 멀리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.

③ 화학물질 취급 중 누출되었을 때에는 경고표지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한다.

④ 화학물질 취급 시 갖추어야 할 개인보호구 및 방재도구를 비치하여야 하며, 사용 방법 및 비치위치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. ☺